

[별표 8] <개정 2002.12.30>

공급자의 안전점검기준 등(제13조제3항관련)

1. 안전점검자의 자격 및 인원

구 분	안전점검자	자 격	인 원
액화석유가스 충 전 사 업 자	충 전 원	별표 19 제4호 나목(3) 의 교육을 받은 자	충전소요인력
	수요자시설 점검원	별표 19 제4호 나목(2) 의 교육을 받은 자	가스배달 및 점검소요인력
액 화 석 유 가스 집단공급사업자	수요자시설 점검원	안전관리책임자로부터 10시간 이상의 안전교육 을 받은 자	수용가 3,000 개소마다 1인
액화석유가스 판 매 사 업 자	수요자시설 점검원	별표 19 제4호 나목(2) 의 교육을 받은 자	가스배달 및 점검소요인력
비 고 :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원이 직접 점검을 행하는 때에는 이를 안전점검자로 본다.			

2. 점검장비

- 가. 가스누출검지기
- 나. 자기압력기록계
- 다. 그 밖의 점검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

3. 점검기준

가. 용기가스소비자 및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로부터 가스를 공급받는
수요자의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

- (1) 가스계량기(중량판매방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기를 말한다)
출구에서 배관·호스 및 연소기에 이르는 각 접속부의 가스누출여부 및 마
감조치여부
- (2) 가스용품의 공사 합격표시 또는 한국산업규격표시 유무
- (3) 연소기마다 퓨즈콕·상자콕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안전장치 설치여부
- (4) 호스의 “T”형 연결여부 및 호스밴드 접속여부
- (5) 목욕탕 또는 화장실에의 보일러·온수기의 설치여부
- (6) 전용보일러실에의 보일러(밀폐식보일러를 제외한다)의 설치여부
- (7) 배기통재료의 내식성·불연성 여부
- (8) 배기통의 막힘여부
- (9) 그 밖에 가스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

나. 자동차연료용으로 가스를 사용하는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

- (1) 용기의 고정상태 및 용기에서의 가스누출여부
- (2) 액면표시장치 및 과충전방지장치의 작동여부

다. 그 밖에 수요자의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

(1) 저장설비가 시설기준에 적합한지 여부

(2) 가목(1) 내지 (9)의 규정에 적합여부